

제 호

접근성 품질인증서

「디지털포용법 시행령」 별표 3에
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도안

- 인증유형:
- 업체명:
- 대상명:
- 유효기간:

「디지털포용법」 제21조제1항 및 「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
인증기관의 장 직인

년 월 일